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9
----------	------

제출일자 : 202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통합돌봄 시행 등 국정과제 수행에 대응하고, 민선9기 공약 및 역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1) 국·소속기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가) 도시공원과 소속 변경 : 기획전략국 → 문화관광국

(나) 농업정책과 소속 변경 : 경제환경국 → 농업기술센터

(다) 위생과 소속 변경 : 주민복지국 → 보건소

(2) 부서 단위 개정사항 : 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가) 경제산업과 : 과 분리(경제산업과 → 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나) 도시공원과 : 과 분리(도시공원과 →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다) 시설관리사업소 : 사업소 신설

(3)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가) 기업일자리과 : 이동(기업지원, 원스톱기업, 일자리창출 ← 경제산업과), 명칭변경(원스톱기업 → 기업정책, 일자리창출 → 일자리), 신설(산업기반)

(나) 민생경제과 : 이동(지역경제, 에너지관리 ← 경제산업과), 명칭변경(지역경제 → 지역민생), 신설(사회적경제)

(다) 조경사업과 : 이동(녹지, 조경사업, 공원조성 ← 도시공원과), 명칭변경(녹지 → 녹지조성)

(라) 조경관리과 : 이동(정원, 조경관리 ← 조경사업과), 명칭변경(조경관리 → 녹지관리) 신설(조경행정, 공원관리)

(마) 건강증진과 : 명칭변경(방문보건 → 건강생활, 건강증진센터운영 → 정신건강), 신설(건강돌봄)

(바) 위생과 : 신설(위생민원)

(사) 시설관리사업소 : 신설(시설행정, 체육시설관리, 여가시설관리)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6. 22. ~ 6. 29.)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홍보협력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를 “홍보협력과, 미래공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경제산업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환경과·청소자원과·농업정책과”를 “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를 삭제한다.

1. 기업정책·기업지원·일자리·산업기반에 관한 사항
2. 지역민생·사회적경제·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위생과”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산림과”를 “문화예술과, 체육

진흥과, 관광과,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산림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지조성, 조경사업,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행정, 정원, 녹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보건과·건강증진과”를 “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증진·건강생활·건강돌봄·가족보건·치매관리·정신건강
3. 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위생민원

제15조제3항 중 “농촌지도과”를 “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정기획·농촌활력·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
2. 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기계작물·원예기술·기술개발·가공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시설관리사업소

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

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

제17조(소장) ①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소장은 시설행정·체육시설관리·여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관리사업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청사 확보, 사무공간 조성, 사무의 인계·인수, 인력 배치, 예산·회계, 계약, 물품·전산장비 확보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별 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병 가 라. 공 가 마. 특별휴가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같은 조례 제23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군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징 수 과	1	지방세징수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같은법시행령 제6조
	2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이륜차 등록에 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발급	•지방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30조
회 계 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같은조례 제17조
교통행정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통지도과	1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환 경 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청소자원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
복지정책과	1	기초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 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 라. 수급권 자격관리 마. 이의신청 등	•기초연금법제10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2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 나.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다. 의료급여증의 자격확인·정정· 증회수등 라. 의료급여연장승인신청서 수합 제출 마.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	•의료급여법 제3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가. 수급자의 관리 나. 급여의 신청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의3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2~3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 가.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나. 유류금품의 처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 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 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 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 바. 장애등급의 조정 사. 장애상태의 확인 아. 등록증의 반환명령 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 차. 보행상의 장애가있는 자에 대한 배려 카. 장애인보장구신청서수합및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는 제외한다) 가. 도로의 점용허가 (공사, 굴착, 건축수반 허가 제외) 점용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다.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제63조, 제73조, 제101조 •도로법 제66조, 제69조, 제70조 •도로법 제106조 •도로법 제117조 제3항 제3호
도시정책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하수하천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토지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
조경관리과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림과	1	산림보호법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허가 나. 불놓기 허가 다.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법 제15조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7조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2호 중 “도시공원과장,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을 “건설과장,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조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전략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도시공원과장”을 “문화관광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조경사업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전략국)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u>홍보협력과</u> , <u>도시공원과</u> , <u>미래공간과</u> 를 둔다. 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u>녹지·조경사업·공원조성·정원·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u> 5. (생략)	제5조(기획전략국) ① ----- ----- <u>홍보협력과</u> , <u>미래공간과</u> 를 둔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제7조(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u>경제산업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환경과·청소자원과·농업정책과</u> 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 원스톱기업·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 ~ 5. (생략) 6. <u>농정기획·농촌활력·축산·가축방역· 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u> 7. (생략)	제7조(경제환경국) ① ----- <u>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청소자원과</u> 를 둔다. ② ----- -----. 1. <u>기업정책·기업지원·일자리·산업기반에 관한 사항</u> 2. <u>지역민생·사회적경제·에너지관리에 관한 사항</u> 3. ~ 6. (현행 제2 ~ 5호와 같음) 7. (현행 제6호와 같음) <u><삭 제></u>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u>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장애인복지과·가족정책과·위생과</u>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u>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u>	제8조(주민복지국) ① ----- <u>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u>를 둔다. ②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u>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산림과</u>를 둔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 (생략)	제10조(문화관광국) ① ----- <u>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산림과</u>를 둔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녹지조성, 조경사업,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u> 5. <u>조경행정, 정원, 녹지관리,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설치) ① (생략) ② 보건소에는 <u>보건과·건강증진과</u>를 둔다. ③·④ (생략)	제11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는 <u>보건과, 건강증진과, 위생과</u>를 둔다.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2조(소장) ①·② (생략) ③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약관리·감염병예방·감염병관리·진료지원 2. <u>건강증진·방문보건·가족보건·치매관리·건강증진센터운영</u> <u><신설></u>	제12조(소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u>건강증진·건강생활·건강돌봄·가족보건·치매관리·정신건강</u> 3. <u>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위생민원</u>
제15조(설치) ①·② (생략) ③ 센터에는 <u>농촌지도과</u>를 둔다. ④ (생략)	제15조(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농업정책과, 농촌지도과</u>를 둔다.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소장) ① (생략) ② <u>소장은 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기계작물·원예기술·기술개발·가공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u> <u><신설></u> <u><신설></u>	제16조(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u>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농정기획·농촌활력·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u> 2. <u>지도기획·교육정보·도시농업·농기계작물·원예기술·기술개발·가공운영에 관한 사항</u>
제4장 삭제 (2014.2.28.)	제4장 시설관리사업소

현행	개정안
<u>제16조 삭제 (2014.2.28.)</u>	<u>제1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둔다.</u> <u>② 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u>
<u>제17조 삭제 (2014.2.28.)</u>	<u>제17조(소장) ① 시설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 <u>② 소장은 시설행정·체육시설관리·여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u>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 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